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	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3	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	(
4	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
5	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1
6	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	51
7	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	81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육군 제8962부대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 조직 개편 사항 반영(안 제3조)
 -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→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4.~5. 24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○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

○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행정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군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변경함(안 제3조)

1) 신설: 총괄조정관

2) 구성 및 임무 변경: 통제관 및 담당관

나. 실무반 편성기준, 대책본부 구성도를 변경함(안 별표 1~별표 6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5. 4.~5. 24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○ 군에서 열리는 공연, 축제,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를 정함(안 제1조·제2조)

나.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책무를 정함(안 제3조~제5조)

다. 안전관리계획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정함(안 제7조·제8조)

마. 안전관리요원, 지원요청을 정함(안 제9조·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·제30조·제3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: 2023. 4. 17. ~ 5. 8.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5) 참고: 법제처 의견제시사례 의견21-0037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외의 규모의 옥외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
- 관내 주요 행사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·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,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[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, 기관 명칭 등을
현행화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
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－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·운영 조례

나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비(안 제3조제2항)

1) 신설: 거창구치소장

2) 위원 소속기관 명칭변경 등 반영

가)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⇒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

- 나)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⇒ 353방첩부대 방첩관
- 다) 국가정보원 관계자 ⇒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
- 다.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함(안 제3조제9항)
- 라. 통합방위 지원본부 소재지 현행화함(안 제4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5. 4.~5. 24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주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, 현행 위원 소속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수도사업소장)

-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오염물질 농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차이가 없음에도 일반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자에 비하여 사용료 부담이 컸던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(안 제11조)
 - 1) 현행: 가동률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 한시적, 사용료 일부 지원
 - 2) 변경: 사용료 지원의 기간 제한 없이 사용료 일부 지원, 지원의 산정기준 변경으로 지원금액 확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3
- 2)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63조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·제153조·제15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 5. 3.~5. 23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4) 비용추계서: 붙임
- 5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하수처리 시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부과 기준을 폐지하여 일반 하수처리 구역의 하수처리 비용과 동일하기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[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과장)

-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
- 북부사거리~중앙교 북단 구간 노상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위탁명	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	
시설명	노상주차장	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
구간 및 위치 (주차면수)	북부사거리 ~ 중앙교 북단 노상주차장(39면)	거창읍 대동리 780-3 (50면/1,946㎡)

위탁기간	2023. 11. 23. ~ 2026. 11. 22.(3년간)	
선정방법	공개입찰	
위탁사무	주차 안내 및 지도, 주차요금 징수, 시설물 유지관리 등	
운영계획	연중무휴 · 4월 ~ 10월 : 08:00 ~ 20:00 · 11월 ~ 3월 : 09:00 ~ 19:30	연중무휴 · 09:00 ~ 18:00(주간)
그간 운영현황	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기간 : 20. 11. 23. ~ 23. 11. 22.	주식회사 푸른솔 기간 : 22. 11. 23. ~ 23. 11. 22.

4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 장점

- 법인·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, 공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

나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주차장법」 제8조 및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
다. 향후일정

- 원가계산 용역 : 2023. 8. ~ 9.
-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: 2023. 10.
- 계약체결 : 2023. 11.
- 위탁운영 : 2023. 11. 23 ~ 2026. 11. 22. / 3년간

라. 예정가격 : 21,338,000원

-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
※ 원가산정용역 시행 후 위탁료 확정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읍 2개의 유료 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
- 민간위탁의 근거, 위탁 기간, 선정방법 등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
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

[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6. 01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- 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복농촌과장)

-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‘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’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절감을 통하여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추진개요
- 사 업 명 :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
 - 사 업 자 :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양주은
 - 사업기간 : 2023년 7월 ~ 12월(6개월간)

○ 발전용량 : 20kw

○ 사업비 : 35,000천원(군 35,000, 자부담 0)

○ 사업유형 : 자가소비형[생산전기 모두 자가소비(판매불가)]

나. 재산의 표시

위치	면적 (㎡)	설치 (㎡)	설치용량 (kW)	사용허가신청자	비고
웅양면 한거리 915-2 (건물 옥상)	토지 : 776 건물 : 219	90	20	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양 주 은	

다. 향후추진계획

○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(행복농촌과) : 군의회 동의 이후

－ 허가기간 :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

－ 허가조건 : 사용료 부과 및 자진철거

－ 연간 사용료 : 산출근거에 따름

⇒ 산출내역 : 재산평가액(공시지가×부지면적×요율5%)×옥상지수×50/100감면×1.1(부가세)

○ 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: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일 ~ 2023. 12.

4. 참고사항

○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13조,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
○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』 제26조

○ 『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』 제12조 4항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○ 본 동의안은 웅양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내 시설물
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

○ 민간위탁의 근거, 위탁 기간, 선정방법 등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
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